

『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산업 발전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임.
-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전자·정보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구미지역 전략산업을 주도할 재단법인 구미디지털전자·정보기술단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설립 및 운영
 -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지
- 재원 조성
 -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대학, 기업 등의 출연금과 기타 자산운용 발생수익금
- 추진사업
 - 연구개발, 기술교육훈련, 인력양성, 창업·성장보육지원, 기술혁신지원사업
- 업무의 위탁
 -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
 - 재단은 사업을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
- 참여기관 등과의 관계
 - 재단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출연·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체결

○ 보고 및 검사

- 시장은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검사와 지도

○ 공무원의 파견

-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공무원 파견

○ 해산시 재산귀속

-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인계

4. 참고사항

- 산업발전법 제8조,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에서 구미지역 진흥 사업으로 추진중인 『구미디지털 전자·정보 기술단지』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설립 및 운영방법, 재원조성,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
- 구미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은 기존의 제조중심의 산업단지를 첨단 기술연구개발 산업단지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자·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재단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